

순천대학교 연구소 및 연구원 규정

제정 2001. 9. 01.
 개정 2007. 6. 26.
 개정 2012. 6. 21.
 개정 2013. 10. 2.
 개정 2015. 6. 16.
 개정 2016. 8. 25.
 개정 2018. 2. 14.
 개정 2018. 7. 4.
 개정 2019. 2. 13.
 개정 2019. 9. 25.
 개정 2019. 12. 16.
 개정 2020. 5. 2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학칙 제14조의 2에 따라 순천대학교 각종 부속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2.)

제2조(적용범위) 연구소의 설치와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연구소의 구분) ① 연구소는 지정연구소와 임의연구소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
 ② 지정연구소라 함은 대학으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소로 대학에서 지원·육성할 필요가 있거나 평가에 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연구소를 말한다.
 ③ 임의연구소라 함은 대학으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기본시설 이외에 행·재정적 지원이 유보된 연구소를 말한다.

제4조(연구소의 설치) ① 이 대학의 학술연구진흥을 위하여 기존의 학내 조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전문영역의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연구소를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소설립신청서(설립목적, 필요성, 시설, 인력, 예산,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 설립동의자 연명부, 규정, 기타 연구소 설립에 관련된 자료를 구비하여 관련 단과대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연구소 설립신청을 받을 경우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④ 최초로 신설되는 연구소는 임의연구소로 한다.

제5조(연구소의 조직)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지정연구소의 소장은 이 대학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의연구소의 소장은 해당연구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임명에 갈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6. 16.)

② 각 연구소에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부(실)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간사는 소속연구소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④ 연구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는 겸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객원연구원, 특별연구원, 박사후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연구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총장이 위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연구소장은 사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보수가 지급되는 다른 직이 없는 사람을 총장이 위촉하는 연구원으로 위촉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장이 정한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확보하여야 하고 약속서를 위촉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제6조의 2(연구원의 자격) 연구소에 두는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겸임연구원 : 이 대학교 전임교원
2. 전임연구원 :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연구보조원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다만, 연구보조원의 학력 제한 완화가 필요한 경우 해당연구소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2.)
4. 객원연구원 : 타 대학 또는 타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
5. 특별연구원 : 협동연구수행자 또는 소속하고자 하는 연구소의 해당 분야 관련 국내외 전문가
6. 박사후 연구원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연구 능력이 우수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신설 2012. 6. 21.)

제6조의 3(리서치 펠로우)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능력이 탁월한 자를 이 대학교의 리서치 펠로우(Research Fellow)로 임용할 수 있다.

② 리서치 펠로우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임용할 수 있다.

③ 리서치 펠로우의 급여(월 300만원 이상)는 책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또는 교육부 리서치 펠로우 지원사업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5.)

④ 리서치 펠로우는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기관부담금은 산학협력단 간접비에서 부담한다.

⑤ 리서치 펠로우는 연구소장 또는 산학협력단 소속사업단·센터장, 단과대학장의 추천과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⑥ 이 대학에 둘 수 있는 리서치 펠로우의 정원 및 채용분야는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신설 2012. 6. 21.)

제7조(행정 및 재정지원) ① 지정연구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특별히 지원·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임의연구소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소 평가) ①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연구소에 대한 운영실적을 평가한다. (개정 2016. 8. 25.)

② 연구소에 대한 실적평가는 연구진흥위원회가 주관하며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③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평가결과는 연구소의 재조정(지정연구소, 임의연구소), 행정·재정지원, 연구소 통폐합 및 폐지 등의 조치에 반영한다.

⑤ 연구소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소를 재조정할 경우에는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정한다. (개정 2016. 8. 25.)

제9조(연구소의 통폐합) ① 연구소는 제8조의 평가에 의한 경우와 연구소간의 자발적인 통폐합 신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통폐합할 수 있다.

② 연구소간에 자발적으로 통폐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연구소 겸임연구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4조 2항에 준하여 연구소통폐합신청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연구소통폐합 신청을 받은 경우 연구진흥위원회와 학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 8. 25.)

제9조의 2(연구소의 폐지) ① 연구소의 평가결과가 연속 2회 최하위 등급(또는 연구소 및 소속 연구원 활동 실적이 2년간 전무한 경우를 포함한다)이거나 또는 연속 3회 평가 중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일 경우는 연구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평가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② 연구소는 운영여건 등을 사유로 총장에게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지정연구소의 재정은 대학회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되 대학회계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대학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며 총액예산제로 운영한다. (개정 2016. 8. 25., 2017. 2. 23.)

② 임의연구소의 재정은 자체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과보고) 연구소의 사업계획은 매 학년도 초에 총장에게 제출하고, 매 학년도 말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나 연구소의 특수성에 따라 사업계획 및 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회계년도)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타)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중요사항은 각 연구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연구소 연구원 위촉 등에 관하여 이 규정과 각 연구소 규정이 상치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12. 6.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설치된 연구소의 기능, 조직 등 일반적인 사항과 각 연구소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소장, 운영위원, (전임)연구원, 연구보조원, 특별연구원, 겸임연구원, 객원연구원 등은 그 임기까지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현행의 법정연구소와 비법정연구소를 지정연구소로 지정하고 기타 연구소는 임의 연구소로 하되, 2003년 2월 28까지 제8조의 평가를 거쳐 연구소의 구분을 재조정한다.

부 칙(2007.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연구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 10.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신설, 삭제 또는 명칭 변경된 연구소는 각각 신설, 삭제 또는 명칭 변경이 결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6.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8.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연구소 평가결과는 2017학년도 연구소 연구활동 실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 7. 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9.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2.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5.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의 별표] 순천대학교에 두는 연구소의 구분 (개정 2020.05.25.)

| 소 속 | 지정연구소 | 임의연구소 | |
|-------|---------|---|--|
| 순천대학교 | 지역개발연구소 | 유용천자원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환경및도시문제연구소 생활체육연구소 식품산업연구소 인문학술원 한국의류연구소 한국지리연구소 두루미과학예술센터 우주항공연구소 철학교육연구소 광양만권경제연구소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자연환경해설교육센터 문화유산연구소 한국경관지질연구소 전남실버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환경유해물질분석평가연구소 한중경장고원야생화연구소 미래융합회유급속연구소 소비자유통급연구소 일본언어문화연구소 소규모유가공연구소 로봇과학교육센터 김치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사범대학부속교육과학연구소 <u>천연물의학·산업연구소</u> | 유용천자원연구소 유전공학연구소 환경및도시문제연구소 생활체육연구소 식품산업연구소 인문학술원 한국의류연구소 한국지리연구소 두루미과학예술센터 우주항공연구소 철학교육연구소 광양만권경제연구소 지역과학기술진흥센터 자연환경해설교육센터 문화유산연구소 한국경관지질연구소 전남실버복지연구소 사회복지연구소 환경유해물질분석평가연구소 한중경장고원야생화연구소 미래융합회유급속연구소 소비자유통급연구소 일본언어문화연구소 소규모유가공연구소 로봇과학교육센터 김치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중소기업경영연구소 사범대학부속교육과학연구소 순천만생태문화연구소 생명약학연구소 정원도시연구소 특수기능복원센터 한국금융경제교육연구소 광양만권S/W융합연구소 정보통신윤리상담연구소 농식품ICT융합연구소 순천대학교수목진단센터 차세대IT-융합소재연구소 천연화장품연구소 <u>차세대스마트소재융용연구소</u> 잘살교육연구소 창의학습컨설팅연구소 스마트교육연구소 <u>스마트에너지연구소</u> 법민법학연구소 전남지역사회연구소 연안해역위생환경연구소 연료전지평가센터 인간로봇융합연구소 여순연구소 <u>콘텐츠매니지먼트연구소</u> |
| | 계 | 9 | 53 |